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84호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레 제 1 6 1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	레 제 1 6 1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	15
○ 조	레 제 1 6 1 3 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64
○ 조	레 제 1 6 1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 조	레 제 1 6 1 5 호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79
○ 조	레 제 1 6 1 6 호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85
○ 조	레 제 1 6 1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89
○ 조	레 제 1 6 1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 조	레 제 1 6 1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 조	레 제 1 6 2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 조	레 제 1 6 2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 조	레 제 1 6 2 2 호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	124
○ 조	레 제 1 6 2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 조	레 제 1 6 2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 조	레 제 1 6 2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35
○ 조	레 제 1 6 2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37
○ 조	레 제 1 6 2 7 호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143
○ 조	레 제 1 6 2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	147
○ 조	레 제 1 6 2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규 칙

○ 의 회 규 칙 제1006-6호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 개정규칙	155
○ 의 회 규 칙 제100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 정규칙	160

공 고

○ 공	고 제 1 2 5 3 호 남동구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공고		164
○ 공	고 제 1 2 5 9 호 만수종합쇼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73
○ 공	고 제 1 2 7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76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1 1 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219
○ 보 건 소 공 고 제 5 8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24
○ 보 건 소 공 고 제 5 9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26

고 시

○ 고	시 제 8 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227
○ 고	시 제 8 7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231
○ 고	시 제 8 8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233
○ 고	시 제 8 9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36
○ 고	시 제 9 0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238
○ 고	시 제 9 1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40
○ 고	시 제 9 2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42
○ 고	시 제 9 3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4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를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응하

여야”를 각각 “따라야”로 한다.

제18조 중 “의회는 인천광역시”를 “의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반려하여야”를 “되돌려 보내야”로 한다.

제20조 제6항 중 “반려하여야”를 “되돌려 보내야”로 한다.

제26조 제3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27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34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7장(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0조 제2호 중 “명예를 높이 선양한”을 “명성을 떨친”으로 한다.

제58조 제2항 중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를 “일련번호를 매긴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사보조자(자문위원) 위촉 요청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자문위원)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안 건 명						
심사보조 대상업무						
심사보조자 (자문위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위촉기간						
위촉이유						

- ※ 첨부서류 ① 이력서 1통
 ② 자격증사본 1매
 ③ 경력증명서 1통

()위원회위원장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증 인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
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증 인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본문.....

.....

년 월 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9호서식]

포 상 추 천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추천훈격		추천순위	
추천사유			
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1부			
추 천 인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인)
			(인)
			(인)
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구 분	주소 또는 소속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 . .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제7장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항과 유사성이 있는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고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7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삭제(제43조~제4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
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구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

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12.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④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겸한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11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의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구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구 및 구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구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한 이 금지되지 아니한 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구 또는 구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

- 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26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

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7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

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2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3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35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남동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따라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8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제40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3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4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5조(교육)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목적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7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제3항 관련)

남동구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역구	
성 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2호서식] (제8조의2제2항 관련)

남동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의회 의원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	-----	--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	--	--	--	--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 [별지 제7호 서식] (제25조제4항 관련)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제26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 . ~ . .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 서식] (제27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 . ~ 20 .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시 분 ~ 시 분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27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	-------------------------------------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	----------------------------------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	--------------------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 증빙서류 첨부
	반환방법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27조제7항, 제34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29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	----	-------	-----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33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34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8호 서식] (제34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 서식] (제34조제6항 관련)

금품 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18.12.24. 공포, 2019.3.25.시행)이 개정되어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 이 조례와 유사성이 있는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항을 본 조례에 담아 하나의 조례로 개정 및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정함 : (조례명)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 (제1조~제2조)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사항 : (제4조~제10조)
-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 (제11조~제18조)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제25조)
-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제26조~제32조)
- 행동강령 운영 위반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제33조~제34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제35조~제43조)
- 행동강령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제44조~제4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13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남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 후

집행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 명칭 :
2. 설립 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그 밖에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남동구의회의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그 밖에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당초 계획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계획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 의원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 원
연구 주제		
심사 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남동구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 활동 비용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기 타	금	원(₩)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 임 1.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의 활성화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제2조~제4조)
-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
-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
- 연구활동비에 관한 사항 (제8조~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를 “남동구의”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로, “관한”

을 “필요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각각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현안이나,”를 “지역현안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문화, 재정·경제, 복지·교육, 도시·환경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소위원회별 10인”을 “분과위원회별 10명”으로, “책임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구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위원 수 및 분과수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성인원 확대 : (현행) 21명 이내 ⇒ (개정안) 40명 이내 구성
- 명칭변경
 - : (현행) 소위원회 ⇒ (개정안) 분과위원회
 - (현행) 책임위원 ⇒ (개정안)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회 확대
 - : (현행) 3개 소위원회 (자치행정, 복지환경, 도시교통)
 - ⇒ (개정안) 4개 분과위원회 (행정·문화, 재정·경제, 복지·교육, 도시·환경)
- 행정기관 명칭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15호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① 구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대상자로 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② 구민장은 구민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장례위원회 설치)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7조(고문)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장례비용) 구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조기제양)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구민장 기간 중 구기를 조기로 제양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장례비 기준 (제12조 관련)

사 항 별	규 격	수 량	비 고
신 문 공 고	3단 15cm	1회	일간지(2개사 이내)
영결식장 설치 및 기자재 등	면적 6m×3m=18㎡ 높이 3m	1 식	음향시설, 텐트 등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영정사진 나. 헌화용 꽃 다. 근조리본 라. 벅타이 마. 장갑 바. 영구차 리본	대 백색국화 흑 색 흑 색 백 색 대 형	1개 500송이 이하 500개 이하 30개 이하 200개 이하 1개	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 화	대 형	1 개	장례위원장 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 32절 180g/㎡	1,000부	
영 구 차	리 무 진 대 형	1 대 1 대	1일간
현 수 막	게시대용	10매 이내	
장례행사 협조기관 가. 조악대 나. 경호 및 경비	차량	2대 이내	필요시 필요시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1조)
-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2조)
- 구민장 선정심의회에 관한 사항 (제3조)
-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조 ~ 제10조)
- 장례기간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 (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16호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대학生の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연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대상자 선발) ① 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

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를 우선 선발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연수 기간에 연수 대학생이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남동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대상, 운영시기에 관한 사항 (제1조~ 제3조)
- 연수방법, 운영계획 수립, 연수 신청에 관한 사항 (제4조~ 제6조)
-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제7조)
-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 보상에 관한 사항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설립 및 등록)”을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을 “제4조에 따라 방범대를 조직·구성하려는 사람은”으로, “지구대 또는 치안센터(파출소)를 경유,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을 “동장을 거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장은 검토의견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지를 최종 검토·확인 후 설립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중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방법대 및 인천남동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방법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청”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를 “지원대상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방법대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인천남동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법대원에게”를 “안전·성인교육 등을 포함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내용 중 조직, 설립 및 등록, 지원대상,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조직과 구성·운영 사항에 대하여 남동경찰서와 협의하는 단서조항 삭제 (제4조제2항)
- 자율방범대 설립 및 등록에 대한 적합여부를 동장이 검토하도록 함 (제5조제1항)
- 적합여부 검토기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변경하여 신중을 기함 (제5조제2항)
- 자율방범대 대표자가 자율방범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방범대원에게 책임의식 부여 (제5조제5항)
- 최초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 등의 소모성 비용 지원을 위한 단서조항 신설 (제7조)
-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구청장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안전·성인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제9조제2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0점”을 “70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계약 및 수행업무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행정기관 명칭 변경 (제1조, 제3조, 제6조제1항)
- 대행실적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변경 (제6조제3항)
- 대행업체에 계약 및 수행업무에 관한 자료 요구 신설(제10조제4항)
-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14조)
- 평가위원회 규정 정비(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자료 요구 등, 수당 등)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를 “재산관리관 지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를 “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있으며, 공무원

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자격요건)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재산에 관하여”를 “공유재산과 관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을 “행정재산·일반재산의”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처분에 대한”을 “처분”으로,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한다.

제8조 중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를 “재산 중 관리하는 데에”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토지에 대하여”를 “해당 토지”로 한다.

제16조 중 “규정에 의하되”를 “규정을 따르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를 “이 경우 해당 재산에”로,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재산에 대한”을 “재산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대하여 사용·수익”을 “사용·수익”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하여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제21조”를 “제21조까지

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관리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을 “행정재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에 대하여”를 “재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6조”를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23조 중 “잡종재산을”을 “일반재산을”로, “대부재산에 대한”을 “대부재산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산에 대하여는”을 “재산은”으로, “의거”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를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 구청장”을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호”를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를 각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를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을 “(토석의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를 “그 밖

의 가격평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부료 산출에 있어”를 “대부료를 산출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를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의”를 “별표 1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제31조제1항제1호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부분에 대하여”를 “부분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를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 필요에 의하여”를 “구가 필요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로, “호와”를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4장 제3절(제40조)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별표]의”를 “때에는 별표 2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별표]”를 “따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별표]상”을 “따른 별표 2 상”으로 한다.

제4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관사)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1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5조 단서 중 “제4호 내지 제8호는 1급 내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비는 1급 및”으로 한다.

제56조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의”로,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57조 중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이에 등재”를 “관사용 비품대장에 기록하고”로 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중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에 대한”을 “징수”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용면적 산출 산식(제30조 관련)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별표 2]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6조 관련)

1. 본청 및 동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 분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충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충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 부속공간면적+ 설비관계면적) x 30~40%]

2. 구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절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실수확보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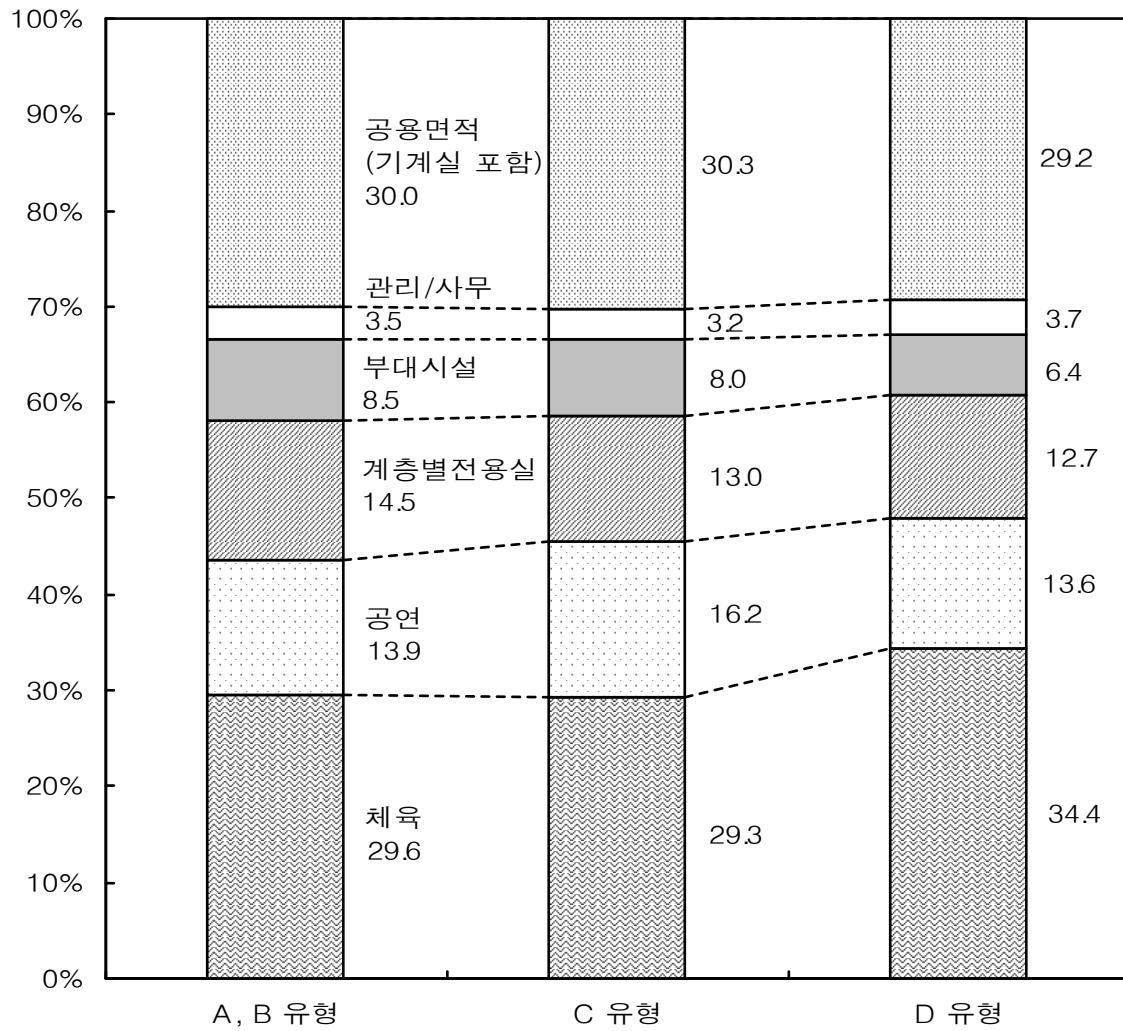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합 계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진 료 활 동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²)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 · 복도 · 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용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조례 제명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구 조례 제명 통일(제명 및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21조제6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이내 감액 규정 신설(제31조제5항, 제6항)
- 상위법령 및 조례 중복 조항 삭제(제3조제5항, 제3조의3, 제3조의4, 제11조, 제40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0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제2조 등)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실.단.과.소”를 “실·담당관·과·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을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회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국.소 또는 동의장”을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단.과장이 제8”을 “부서장이 제8조”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의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소모품에 한한다”를 “소모품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리.제조)품의”을 “(수리·제조)품의”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2절 출납”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2장 출납”을 삽입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

호 내지 제5호의”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중”을 “호 중”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2회(4월,9월)이상”을 “연 2회(4월, 9월)이상”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3절 보 관”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3장 보관”을 삽입한다.

제20조 제1항 중 “물품운용관이,전용품”을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소.동의 장”을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4절 장 부”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장부”를 삽입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서대장

제24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부중의 내용을”을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에서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5절 검사 및 인계”를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5장 검사 및 인계”를 삽입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회사무국.소.동의 장”을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회사무국.소.동의 장”을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 중 “경질”을 “교체”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의회사무국.소.동의 장”을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으로 한다.

제3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 중 품종 구분 기준의 (1)의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체계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반영 (제5조 별표1, 제24조의2, 제2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 조문 체계 정비 (제11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4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법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어선의 입·출항, 조석의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별표 2”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6조 관련)

[illegible]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반면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제3조의2)
- 과태료 규정 삭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2호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알림)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6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1조 ~ 제4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알림 및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제5조, 제6조)
-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남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를 “성별영향평가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인천광역시”를 ““성별영향평가”란”으로, “분석평가하여”를 “성별영향평가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

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반영하 여야”를 “반영하여야”로, “기금운영”을 “기금운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을 “특정성별영향평가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를 “특정성별영향평가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을 “(종합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종합보고서”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남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남동구의회 의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서”를 “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을 “성별영향평가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명칭을 변경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 (조례 제명 및 제1조 ~ 제12조, 제18조, 제19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정비 : (제12조 ~ 제 1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남동구의회 의원

제7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정기회를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정비 : (제7조~ 제11조)
- 위원회 정기회 개최 시기 변경(1회→2회) :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생아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이유

- 출산장려시책 전환(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 지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 (2015.8.13.)」 관련, 중복사업 폐지 권고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조폐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동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호구역의 현황

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다.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마.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바.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사.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남동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등·하교 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 및 시설장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내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전부 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제1조, 제2조)
-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4조)
-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 (제6조)
-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
- 교통봉사단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7호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권장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시장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구민에게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이나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계기마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제3조)
-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
-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고 1회에 한정하여”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기금 용자 대상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통사항 정비 :
(제7조~제8조, 제10조, 제12조~제13조)
- 기금 용자 대상 변경 : (제1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7월 12일

남동구 조례 제162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를 “남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이라 함”을 ““외국인”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거주외국인”이라 함”을 ““거주외국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인 가정”이라 함”을 ““외국인 가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을 ““외국인 지원 단체”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남동구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위하여 “남동구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를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5월20일을”을 “5월 20일을”로, “1주간을“세계인주간””을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를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반하는 표창 부상품 지원 규정 삭제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공통사항 정비 : (제7조, 제9조~제11조)
- 표창 부상품 지원 조항 삭제 : (제1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규 칙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공포)

☐ 제 명 :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 개정이유

- 남동구의회 규칙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남동구민이 남동구의회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정비 (안 제2조)
-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9.06.21)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최 재 현

2019년 07월 12일

남동구의회 규칙 제1006-6호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규칙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남동구민이 남동구의회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정비) 남동구의회 규칙의 제명 및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정비) 남동구의회 규칙의 본문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등 정비(제2조 관련)

연번	자치법규명	관련 조항	현행	개정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제2조제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	남동구의회 의장
		제4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1조,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남동구의회 의장
		별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의장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5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 사무국	남동구의회 사무국
6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남동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별표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별표 2】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정비(제3조 관련)

연번	자치법규명	관련 조항	현행	개정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지방자치법」---윤리특별위원회
		제2조	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4조	1	어느 하나
		제6조3항	간사	부위원장
		제7조 제목,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증빙서류	증명서류
		제8조 제목	통고	통보
		제10조	의회사무기구	의회사무국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1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신분증
		제3조제1항	첨부하되	붙이되
		제5조제2항	첨부한	붙인
		제5조제2항	동일한	같은
		제5조제2항	이내에	이 내
		제6조제1항	회수하여야	돌려받아야
		제6조제2항	회수할	돌려받을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심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에 제출된---심사와 처리
		제2조제1항	의회---의회의원---청원서에---의거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 의원(이하 "의원"으로 한다)---청원서에는---따라
		제3조제1항	의회 의장	남동구의회 의장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조제1항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있다고---의한	제4조제3호에 따라---제1항에 따른---이유가 있다고---따른
		제6조제1항	인쇄, 배부하는---구성, 회부한다---주소, 성명,	인쇄· 배부하는---구성· 회부한다---주소· 성명· 청원

			청원의 취지, 소개---접수 년월일	의 취지· 소개---접수년월 일
		제9조제1항	심사, 의결을---당해--- 심사, 의결---당해---의 한다---심사, 의결	심사 및 의결에---해당 ---심사· 의결---해당 ---따른다---심사· 의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호에---의	호의 어느 하나에---본회의
		제11조제2항	그에따른	그에 따른
		제13조제1호	청원접수	청원 접수
		제14조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 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 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 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 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5조	당해	해당
		제1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회의규칙에	제9조에 따른---「지방자 치법」 및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제17조 제목	준용규정	준용
		제1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 회조례와 인천광역시남동 구의회의회의규칙에 준용한다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와 「남동구의회 회의 규 칙」을 따른다
4	인천광역시 남동 구 의회사무국 직 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청 원 심사 규칙	<삭제>
		제3조	의회사무국	사무국
		제4조	의사집행	의사진행
5	인천광역시 남동 구의회 회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중 부서명	의회사무국	사무국
		제1조, 제2조 제3항	패용하는	다는
		제4조제2항, 단서	사전에	미리
		제6조제1항	패용한	단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위주의 연수 실시 및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 강화 : (안 제4조 ~ 제5조)
-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 (안 제6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부당한 집행경비 환수규정 신설 : (안 제7조)
- 공무출장계획서 공개 규정 신설 : (안 제8조)
- 출장결과 보고 및 예산 편성.집행 규정 신설 : (안 제9조 ~ 제10조)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9.06.21)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
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최 재 현

2019년 07월 12일

남동구의회 규칙 제100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의원의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신분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심사기준) 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 국외출장 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

우 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253호

남동구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공고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해 나갈 『남동구여성합창단』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 7. 8.

남 동 구 청 장

1. 모집인원 및 주요임무

- 모집인원 : 20명 이내
- 주요임무
 -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경주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 공연연습과 단장(부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참여

2. 응시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만20세 이상의 여성
- 지역사회 및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성
- 주 2회 이상의 정기연습 및 각종 공연활동 가능한 여성

※ 단,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남동구 여성합창단원 중 해촉된 자 제외

3. 지원서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7. 8.(월) ~ 2019. 7. 31.(금) [24일간]
- 지원서접수 : 2019. 7. 22.(월) ~ 2019. 8. 2.(금)
- 지원서교부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의
“알림마당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서 출력사용
- 접 수 처 :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주소)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우편번호 21589, ☎032-453-2132)
- 접수방법 : 방문(근무시간 내)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① 지원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부착) 1부(공고문에 첨부한 양식)
- ②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심사방법

- 선발기준 : 표현력, 음정, 음색, 박자감 등 음악적 재능과
단원간 화합, 성실성, 봉사정신 등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실기심사 : 2019. 8. 9.(금) 14:00
 - 심사장소 : 여성합창단 연습실(남동소래아트홀/논현동 소재)
 - 실 기 곡 : 총 1곡
 - ▶ 지정곡 1곡 : “님이 오시는지”

※ **심사일시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자에게 개별 SMS문자 안내**

6.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9. 8. 13.(화)한
- 발표방법 : 합격여부 개별 SMS문자 통보

7. 단원 처우

- 직 위 : 남동구여성합창단 단원
- 위촉기간 : 1년 (재위촉 가능)
- 대 우 : 무보수 명예직
 - ☞ 남동구 대표 예술단으로서의 사명감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활동
- 지 원
 - 정기연습 및 각종 공연을 위한 실비보상
 - 예산범위 내 합창단 운영 경비 지원
- 활 동
 - 매주 2회 이상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필요시)
 - 각종 공연 및 합창대회 등 참가

8. 기타 유의사항

- 시간관계상 모든 곡은 중간에 끊어질 수 있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 후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실기심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증(신분증)을 지참하고 심사장소에 지정된 시간 내에 집결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문화관광체육과(☎032-453-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원 서

■ 응시파트 : 소프라노 / 메조소프라노/ 알토 (해당파트에 ○ 표시)

■ 응시번호 :

성명	(한글)	(한자)		사 진 (3.5×4.5cm)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주소				
최종학교명		전공 직업		

지원동기		
주요경력 (합창단 및 봉사활동 위주로 작성)	기 간	경 력 사 항

본인은 남동구 여성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접 수 증	
성명	
생년월일	
접수일 / 접수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 인천시 남동구 거주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명 또는 인)

2. 이용기관의 명칭 : 남동구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기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심 사 총 괄 표(안)

응시 번호	성 명	응시 파트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총점	최 종 합격여부
			위원 1	위원 2	위원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응시파트 : S(소프라노) / M(메조소프라노) / A(알토)

※ 음정, 음색·박자감, 표현력과 단원 간 성실·화합·봉사와 태도를 7:3의 비중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 실기 40 이상, 면접 15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

확 인 자 : _____ (서명)

신규단원평가채점표(안)

접수번호 :

성 명 :

채점항목 :

구 분	실 기			면 접		총 점
	음 정	음색·박자	표현력	성실·화합·봉사	태도	
배 점	25	25	20	15	15	100
채 점						
심사평						

심사자 : _____ (서명)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259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2(2005.01.11)호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0(2009.12.21)호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변경) 고시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3-67(2013.7.29.)호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51(2018.04.20.)호로 고시된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관계서류의 공람)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관계서류를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하오니,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9년 7월 11일 ~ 2019년 7월 24일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가.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032)453-2664)
 - 나.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2층 032)463-1303)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변경)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 가. 사 업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일원 11필지(만수동72-46번지 외 10필지)
- 2) 면 적 : 7,227m²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선화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2층(만수동,만수쇼핑)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있음)

- 시행기간 : (기정) 인가고시일로부터 ~ 2017. 7. 28

(변경) 인가고시일로부터 ~ 2022. 11. 28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사 업 명	대지면적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7,227.0m ²	근린 및 판매시설	69.53%	381.8%	41.7m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m ²	-	임대 (-세대)
-m ²	-	분양 (-세대)
-계	-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규모(m ²)	종류	규모(m ²)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	도 로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해당사항 없음
	공 원	-	주 차 장	-		
	합 계	-	합 계	-		

5. 기타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으며, 본 공고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문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032)453-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비사업 명칭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②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72-46번지 외 10필지		
③ 의견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 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2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12.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12.24. 「지방세 기본법」 세무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개정 사항 반영과 국세 및 우수 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2018년 감사원 세무조사 관련 지적사항 반영 및 현행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법적안정성·예측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안 제11조제1항)
- 중복조사 문제 해결 위해 “부분세무조사 제도” 신설(안 제13조)
- 자치단체별 기본형식 및 용어 통일(안 제14조)
- 세무조사 중지 중 자료제출 요구 등 금지(안 제25조)
- 조사 전 납세자 권리현장 요지 낭독의무 신설(안 제34조제1항)
- 선정된 조사대상의 조사누락 방지를 위한 조사책임자의 관리의무(안 제36조제2항)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규정(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360,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 제4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7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18.12.24. 「지방세 기본법」 세무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개정 사항 반영과 국세 및 우수 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2018년 감사원 세무조사 관련 지적사항 반영 및 현행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법적안정성·예측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안 제11조제1항)
- 중복조사 문제 해결 위해 “부분세무조사 제도” 신설(안 제13조)
- 자치단체별 기본형식 및 용어 통일(안 제14조)
- 세무조사 중지 중 자료제출 요구 등 금지(안 제25조)
- 조사 전 납세자 권리현장 요지 낭독의무 신설(안 제34조제1항)
- 선정된 조사대상의 조사누락 방지를 위한 조사책임자의 관리의무(안 제36조제2항)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규정(안 제38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참고(안)(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7 2019.3.6.)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은 법 제147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 세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1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지방세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

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남동구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자
3.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 기간 및 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의 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세무조사 기간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30조(조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의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가. 조사공무원은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나.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시작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 다. 세무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마.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사.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 아.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사. 납세자의 이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여야 하며,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차.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조사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치는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하기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라.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 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 법 인 명 : (인)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0000년 월 일부터 ~ 0000년 월 일까지	제 조 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건 설 업 ()	
○ 연 락 처 :	판 매 업 ()	
○ e-mail(담당자) :	운 송 업 ()	
	기 타 ()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남동구청장

(297mm×210mm, 가로서식)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0개년) 및 각 서식 작성시 남동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0년분 작성)

※ 작성 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세무과

우편번호 : 21589

※ 문의사항 전화 : (032)- FAX) 03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급여대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4)),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시설물·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서면 세무조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 서식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매년 7월1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모든 사업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

- 자본금 및 종업원수는 매년 7월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① 정당 세액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15조 제2호에 따른 세액 기재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자본금 (a)	종업원수 (b)	정당 세액 (c)		기납부 세액 (d)		차인세액 (e)(c-d)	
명칭	소재지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사업소 소재지, 명칭, 연면적 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과세제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과세제외 내역 :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장)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㉑)	①과 세 제 외 면 적				과세면적 ㉒(㉑-㉔)	②정당 세액 (㉕)	기납부 세 액 (㉖)	납부 일자	차인세액 ㉗(㉕-㉖)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㉔)					

(297mm²×210mm², 가로서식)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종업원수 산정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국외근무자 제외, 수시 고용종업원 포함)

※ 수시고용 종업원수 산정방법 :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수

④ 산출세액

- 0000년까지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0000년이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남동구 소재 사업장)

0000년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말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①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②소계														
③ 종 업 원 수	상시														
	수시														
	계														
과세표준 ③=(①-②)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③×(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 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① 소득세 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기 타 : 예) 기타소득, 연금소득, 저축해지 추정세액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 법인세법 73조, 98조 :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② 산출 지방소득세 : $\text{합계(과세표준액)} \times \text{「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세율}$

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0000년	사업장	남동구	사업장명	
------	-------	-----	-----	------	--

구 분 별 월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작성요령

○ 매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종원업수, 사업장 연면적은 각각 남동구 관내 전체와 전국 전체의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을 작성

- 사업장별 안분비율 계산

= $[(\text{남동구 관내 종업원수} / \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text{남동구 관내 건축물 연면적} / \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div 2$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재

① 정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세액 기재

② 기납부 세액은 당해연도 기납부 세액을 기재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0000년

(단위 : 원)

사업장			종업원수		사업장 연면적		사업장별 안분비율 (남동구비율) (%)	법인세 과세표준			정당 세액 ㉠	기납부 세액 ㉡	차인 세액 ㉢(㉠-㉡)
명칭	소재지	사업 개시일	(남동구) 종업원수 (명)	(전국) 총종업원수 (명)	(남동구) 사업장 (㎡)	(전국) 총사업장 (㎡)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등양도 소득	미환류 소득			

공 고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
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압수·영치 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예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직인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

(단위: 원)

[illegible]

공 고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111호

공인 신조 · 폐기 공고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인 신조 ·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공인 신조 · 폐기 사유
 -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공인 폐기 및 신조
- 공인의 최초사용일(공인 폐기일) : 2019. 7. 15.
- 신조 · 폐기 공인 수 : 신조(13개), 폐기(12개)

○ 신조 공인내역

○ 의회사무국 신조 공인 목록 (1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남동구의회인		고인체 3.6cm × 3.6cm	
신 조 공 인	남동구의회운영위원장인		고인체 2.4cm × 2.4cm	
신 조 공 인	남동구의회 총무상임위원회위원장인		고인체 2.4cm × 2.4cm	
신 조 공 인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상임위원회위원장인		고인체 2.4cm × 2.4cm	
신 조 공 인	남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고인체 2.4cm × 2.4cm	
신 조 공 인	남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인		고인체 2.4cm × 2.4cm	

신 공 인	남동구의회지출원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공 인	남동구의회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공 인	남동구의회물품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공 인	남동구의회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공 인	남동구의회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공 인	남동구의회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공 인	남동구의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 공인내역

○ 의회사무국 폐기 공인 목록 (1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인		한글전서체 3.6cm × 3.6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운영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총무상임위원회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사회도시상임위원회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장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지출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물품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5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7.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9. 7. 8. ~ 2019. 7. 22.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04-0199485	쌍킹빅	백0영	간석동 380-2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3)
 - 청문일시 : 2019. 8. 5.(월)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 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의거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식품허가팀 032-453-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5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7. 24.
3. 처분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4. 공 고 기 간 : 2019. 7. 9. ~ 2019. 7. 23. (15일간)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70200381	에스와이에스	서**	구월남로 153, 4층일부(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19.06.30	2019-07-24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70200382	에스와이에스	안**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6. 고지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2019. 7. 23.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19. 07. 0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8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42-1 외 2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2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4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42-1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말로91번길 18-10 기초구간에위치하여18-10을건물 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4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44-1 (논현동)	20090706	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능허대로625번길 152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2를건물번 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658-1 (구월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22번길 6 기초구간에위치하여6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80-1 (구월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4 기초구간에위치하여9-4를건물번 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24-1 (간석동)	20090710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1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10을건물번 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9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65-1 (만수동)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석정로574번길 9-14 기초구간에위치하여9-14을건물번 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23-1 (구월동)	20090706	인천과 하와이를 상징하는 인하대에서 시작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0을건물번 호로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4-1 (구월동)	20090706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1을건물번 호로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08-1 (구월동)	20090706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2을건물번 호로부여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3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20-1 (구월동)	20090706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3을건물번 호로부여	

제1484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7. 12. 금요일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2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0-1 (구월동)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4을건물번 호로부여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9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25-1 (간석동)	20090706	예전 주안면과 다소면에는 돌과 우물이 많았다는? 유래에서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5을건물번 호로부여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67-1 (논현동)	20091116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족과 의논하며 넘던 고개라는 지역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6을건물번 호로부여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5-1 (만수동)	20091116	담방마을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7을건물번 호로부여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05-1 (만수동)	20091116	행정구역명(만수동)을 이용하여 만수로로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8을건물번 호로부여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4-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9-1 (만수동)	20090710	지역명칭 인용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9을건물번 호로부여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64-1 (만수동)	20090710	지역명칭 인용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30을건물번 호로부여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7-1 (만수동)	20091116	장승로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31을건물번 호로부여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9-104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78-1 (논현동)	20091116	인근에 소래포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32을건물번 호로부여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10-1 (만수동)	20090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33을건물번 호로부여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9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01-1 (만수동)	20090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34을건물번 호로부여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55-1 (서창동)	20120328	서창동 남쪽에서 시작되는 도로임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9-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9-35을건물번 호로부여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87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간석동 550번지 일원 (간석성락), 311-1번지 일원 (간석상인천초교) 지적 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7. 0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내 역 별 첨	
기 준 원 점 명	가리좌표, 세계측지계	
소 재 지	남동구 간석동 550번지 및 311-1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2010년 6월 23일, 2010년 8월 6일	
표 지 재 질	표철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기 고시된 점 중 누락된 점(24점)	

지적측량기준점 성과표

일련 번호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가리좌표계성과(구소삼각)		세계측지계성과(GRS80)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	지적도근점	4081	3660.27	-14910.19			2010.06.23	철재	간석동 550	간석성락재개발지구
2	지적도근점	4083	3547.28	-14906.99			2010.06.23	철재	간석동 516-6	간석성락재개발지구
3	지적도근점	4084	3484.39	-14887.56			2010.06.23	철재	간석동 516-6	간석성락재개발지구
4	지적도근점	4090	3613.52	-14795.00			2010.06.23	철재	간석동 550	간석성락재개발지구
5	지적도근점	4091	3588.16	-14768.57			2010.06.23	철재	간석동 485-17	간석성락재개발지구
6	지적도근점	4095	3414.09	-14726.06			2010.06.23	철재	간석동 494-1	간석성락재개발지구
7	지적도근점	4099	3696.07	-14582.02	540234.639	173680.015	2010.08.06	철재	간석동 454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8	지적도근점	4100	3821.73	-14598.99	540360.320	173663.225	2010.08.06	철재	간석동 404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9	지적도근점	4101	3919.59	-14581.71	540458.150	173680.645	2010.08.06	철재	간석동 440-1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0	지적도근점	4102	3972.61	-14581.97	540511.169	173680.461	2010.08.06	철재	간석동 4035-6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1	지적도근점	4105	4086.43	-14405.87	540624.736	173956.740	2010.08.06	철재	간석동 320-11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2	지적도근점	4110	3610.69	-14127.01	540148.616	174134.922	2010.08.06	철재	간석동 285-9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3	지적도근점	4111	3606.20	-14225.17	540144.269	174036.759	2010.08.06	철재	간석동 303-10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4	지적도근점	4112	3600.13	-14269.35	540138.259	173992.562	2010.08.06	철재	간석동 336-21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5	지적도근점	4121	3831.24	-14390.86	540369.533	173871.382	2010.08.06	철재	간석동 332-1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6	지적도근점	4122	3860.89	-14394.35	540399.187	173867.941	2010.08.06	철재	간석동 325-20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7	지적도근점	4123	3927.22	-14397.50	540465.512	173864.886	2010.08.06	철재	간석동 325-4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8	지적도근점	4124	4027.49	-14402.68	540565.784	173859.850	2010.08.06	철재	간석동 324-3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19	지적도근점	4125	3824.06	-14534.98	540362.558	173727.237	2010.08.06	철재	간석동 445-4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20	지적도근점	4126	3829.02	-14443.30	540367.391	173818.924	2010.08.06	철재	간석동 426-1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21	지적도근점	4127	3834.46	-14333.48	540372.673	173928.765	2010.08.06	철재	간석동 325-17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22	지적도근점	4128	3837.03	-14282.86	540375.174	173979.391	2010.08.06	철재	간석동 327-9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23	지적도근점	4129	3840.84	-14238.12	540378.920	174024.141	2010.08.06	철재	간석동 329-11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24	지적도근점	4130	3842.01	-14190.16	540380.017	174072.096	2010.08.06	철재	간석동 309-11	상인천초교재개발지구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8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80 외 6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80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7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80 (간석동)	20090706	만월산을 통과하는 도로로 산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9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로 8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0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8-5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67 (구월동)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9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86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67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32번길 10-5 (구월동)	20091116	구월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232번길 10-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5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52번길 5-7 (간석동)	2009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352번길 5-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7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52번길 5-3 (간석동)	2009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352번길 5-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3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25번길 5-8 (논현동)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225번길 5-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8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62번길 6-5 (서창동)	20120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7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62번길 6-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5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7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80 (간석동)	2019.7.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8-5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67 (구월동)	2019.7.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52번길 5-5 (간석동)	2019.7.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52번길 5 (간석동)	2019.7.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65번길 68-20 (구월동)	2019.7.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7.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을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76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5	남촌	어린이 공원	남동구 남촌동 376번지	6,256.2	감)312.0	5,944.2	1985.10.18 (인천직할시 제884호)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5	남촌 어린이공원	·변경: 일부해제 -면적 : 6,256.2㎡ →5,944.2㎡(감 312.0㎡)	기존 공원 내 경로당 일원을 제척 하고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제공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90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간석동 550번지 일원(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7.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내 역 별 첨	
기 준 원 점 명	가리좌표, 중부좌표, 세계측지계	
소 재 지	남동구 간석동 550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2019년 5월 9일	
표 지 재 질	표철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 (17점)	

지적 기준점 성과표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구분	측점명	세계측지좌표		중부좌표		가리원점		표고(m)	표지재질	원점	설치일자
		x(m)	y(m)	x(m)	y(m)	x(m)	y(m)				
지적도근점	8036	540185.41	173345.45	439879.34	173275.15	3646.37	-14916.54	7.750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37	540161.98	173443.07	439855.9	173372.77	3623.07	-14818.88	8.012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38	540135.41	173466.05	439829.34	173395.75	3596.54	-14795.87	8.350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39	540140.40	173496.10	439834.33	173425.8	3601.58	-14765.83	8.277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0	540129.10	173534.08	439823.03	173463.78	3590.33	-14727.83	8.656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1	540014.81	173535.84	439708.74	173465.54	3476.04	-14725.90	13.142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2	539952.29	173515.81	439646.21	173445.51	3413.49	-14745.84	17.825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3	539958.12	173478.66	439652.05	173408.37	3419.26	-14782.99	17.712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4	539961.43	173450.92	439655.36	173380.63	3422.54	-14810.74	17.424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5	539966.40	173408.25	439660.32	173337.95	3427.44	-14853.42	14.279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6	539968.72	173385.67	439662.64	173315.38	3429.73	-14876.00	13.885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7	540054.21	173365.61	439748.13	173295.31	3515.19	-14896.19	12.651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8	540121.93	173344.44	439815.85	173274.14	3582.88	-14917.45	11.474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49	540123.19	173422.55	439817.11	173352.25	3584.25	-14839.35	8.598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50	540051.76	173441.82	439745.68	173371.52	3512.85	-14819.98	9.596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51	540027.04	173455.18	439720.97	173384.88	3488.15	-14806.58	14.244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지적도근점	8052	540029.31	173484.80	439723.24	173414.5	3490.47	-14776.97	15.322	철재	세계측지계, 중부, 가리	2019-05-09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7.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을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6-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간석동 416-1번지 일원	-	증)555.9	555.9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위치 : 간석동 416-1번지 일원 - 면적 : 555.9㎡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여 노외주차장 건설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7.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을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8-1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구월동 1108-12번지 일원	-	증)475.3	475.3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위치 : 구월동1108-12번지 일원 - 면적 : 475.3㎡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여 노외주차장 건설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9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7.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4-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 청사	남촌 도립동 행 정 복 지 센터	남동구 남 촌 동 354-1번지 일원	-	증)1,000.2	1,000.2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청사 (남촌 도 립 동 행정복지 센터)	· 공공청사 신축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4-1번지 일원 - 면적 : 1,000.2㎡	· 동 주민센터 기능 변경 (→ 행정복지센터) · 남촌도립동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지역복지 허브화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 따라서,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청사 신축을 계획함 · 행정복지센터 신축 규모(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의 업무시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통하여 용도지역(1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